

## 신고로 인한 불이익 대처법

### 1. 부패신고 이전 단계

▶ **가급적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논의·시정하도록 합니다.**

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자연스럽게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, 조직의 시정여지가 없고 오히려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 외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.

▶ **직장내 업무용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합니다.**

직장내 발신한 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이 열람될 수 있으며, 조직 구성원의 메일이나 문서경로가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 내역 등이 남아 있어 내부 신고자로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.

### 2. 부패신고 이후 단계

#### 신분이 밝혀지기 전

▶ **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**

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하여 통화, 면담 등을 하는 경우 그 접촉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▶ **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합니다.**

소속기관·부서내에서 내부 신고자로 의심하는 것 같더라도 최종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▶ **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을 때 당황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.**

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고사항 조사 시 당황하거나 위원회 조사관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

#### 신분이 밝혀진 후

▶ **소속기관·부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.**

항시 소속기관의 차별 또는 불이익 조치를 주시하여야 하며, 그것을 매일 기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, 필요시 위원회 보호조사관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더라도 격렬한 항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.**

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신고자의 귀책사유를 유발하여 오히려 내부 신고자가 징계 또는 사법처리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####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

▶ **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**

위원회 신고자 보호 담당부서에 보호상담과 보호요청을 하고, 소청심사 또는 부당해고 구제 등 다른 불복구제 절차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하셔야 합니다.

120-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본관 19층 (보호보상과)  
TEL : (02) 360-2608, 6643 FAX : (02) 360-3555  
[www.acrc.go.kr](http://www.acrc.go.kr)

### 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안내

당신의 용기에  
안심을 더+합니다



안심하고 신고해 두십시오

부패신고  
전화상담 **1398**

 **국민권익위원회**  
고충처리·부패방지·행정심판

## " 부패신고자는 비밀보장 · 신분보장 · 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"

### 비밀보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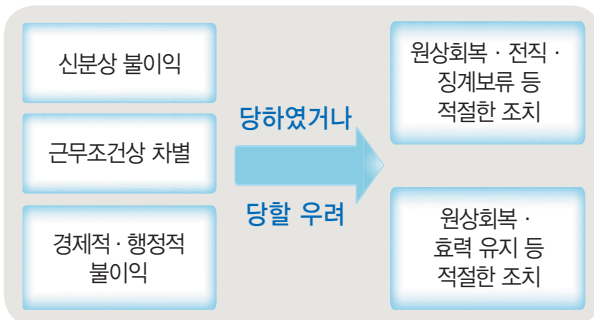
####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!!

-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.
- 조사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

### 신분보장

####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!!

-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.
-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



### 신변보호

-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변보호의 종류	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	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
	일정 기간 신변 경호	
	출석 · 귀가 시 동행	
	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	
	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	

### 의료지원 · 법률구조

- 부패신고로 인하여 **정신적 고통**을 받는 신고자에게 **무상 진료**를 지원해 드립니다.
- 부패신고를 이유로 소송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지원 및 소송비용을 감면해 드립니다.

### 책임감면과 벌칙제도

- 부패신고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**감경** 또는 **면제**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

#### 위반자는 이렇게 처벌됩니다 !!

- 불이익 처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**1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1천만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됩니다.
-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한 자에게는 **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

### 보상 · 포상

#### 보상 · 포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!!

-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있는 경우 **최고 20억원**까지 **보상금**을 지급합니다.

#### ■ 보상금 지급액(예시)

보상대상가액	보상금(최대)
1억원	2천만원
5억원	7천 6백만원
20억원	2억 2천 6백만원
454억원	20억원

\* **보상대상가액** :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

- 부패신고로 인하여 **공익증진** 등을 가져온 경우 **최고 1억원**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**최고 2억원**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